



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규정

규정 번호	4-1-34
제정 일자	2015. 3. 20.
개정 일자	2024.3.20.
책임부서/팀·계	입학학생처

제1조(명칭) 본 위원회는 신안산대학교(이하 '본 대학'이라 한다)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위원회는 학칙 제15조3에 의거하여 본 대학의 신입생선발을 위한 입학전형 고사(면접·실기고사 등)시행에 관한 영향평가를 위한 구성, 기능,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입학학생처장으로 한다. <개정 2022.3.31., 2023. 3.30., 2024.3.20.>

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임교원이상 3인 이내 내부위원과 고교 교육과정 전문가, 현직 고교 교사, 학부모 등의 3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. <2022.3.31. 개정>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선행학습영향평가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제외하며,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. <2022.3.31. 개정>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5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<2022.3.31. 개정>

제6조(회의소집) 위원회는 매년 입시마감직 후(2월말)부터 3월까지 이내 개최한다.

제7조(기능) ① 위원회는 제2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심의한다.

1. 입학전형 시행 후 논술 등 필답고사(적성고사 포함), 면접·구술고사, 신체검사, 실시·실험고사, 교직적성·인성 검사 등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한다. 단, 예체능 계열의 실기고사는 공교육 정상화법 제16조 3호에 따라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, 그 외에도 예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.

2. 선행학습영향평가 실시결과 고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되었다고 판단되거나, 기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연도 대입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한다.

3. 매년 입시마감직 후 실시한 선행학습 영향평가결과는 3월말까지 입학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.

제8조(회의 및 의결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9조(간사) ① 간사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.

제10조(사무) 본 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은 입학홍보처에서 지원한다. <2022.3.31. 개정>

제11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이 규정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이 규정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